

 농림축산식품부	<h1>보도자료</h1>	
2020년 4월 17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재해보험정책과 과 장 박선우(044-201-1791), 서기관 강승규(1794)/제공일: 4월 16일(총 4매) 농업금융정책과 과 장 서준한(044-201-1751), 사무관 허정은(1752)		



## 농식품부, 코로나19 피해농가 정책자금 지원 강화

- 《 주 요 내 용 》**
- ◆ 코로나19 피해농가에 대한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지원으로 3.18.~4.10.일까지 244농가에 62억 원의 긴급자금 지원
  - ◆ 특별재난지역(대구, 경북 경산·청도·봉화) 농업인에 대한 농축산 경영자금 이자감면(2.5%→0%) 및 상환연기(1~2년) 추가 지원(6.1.)
  - ◆ 농업종합자금 및 농업경영회생자금 관련 대출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농업인 등 금융부담 경감 지원
    - 농산물가공사업자 등의 운전자금 만기 재대출 시 적용되던 정책자금 졸업제(원금 20% 상환의무)를 연말까지 한시적 유예
    - 코로나19 확진·자가격리로 인한 영농활동 애로, 납품 취소 등에 따른 생산·매출 감소 시 저리의 경영회생자금으로 대환 지원

□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, 이하 농식품부)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농업인 등의 경영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의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지원을 지속하는 한편, 추가적으로 정책자금 이자감면과 대출요건 완화를 시행한다.

### 〈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지원 〉

- 농식품부는 지난 3.18.일부터 '코로나19'로 경영 상 어려움에 직면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재해대책경영자금 600억 원을 융자 지원하고 있다.
  - 지원 대상은 '코로나19' 확진 또는 감염 의심으로 격리되어 영농활동이 어렵거나 농작업 인력 부족으로 생산·수확을 하지 못하는 경우, 그 밖에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운 경우 등이며,
  - 농가당 최대 5천만 원(고정금리 1.8%, 4월기준 변동금리 1.2%) 한도 내에서 관할 읍·면·동사무소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지역농협에 신청 가능하다.

- 4.10.일 현재 527농가가 지자체를 통해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신청하여 농협의 심사를 거쳐 244농가에 총 62억 원을 대출하였고,
  - 갑작스러운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\* <사례 1> 경북 예천군에서 사과농사(2.7ha)를 하는 이○○씨는 이웃 확진자와 왕래한 사실로 자가격리되어 직거래 장터에 참여를 못하는 등 경영난을 겪던 중 재해대책경영자금 1천 8백만 원을 지원받음

\* <사례 2> 부산 강서구 대동 소재 시설채소·화훼 생산단지의 경영난을 겪은 10개 농가에 대해 총 1억 9천만 원의 재해대책 경영자금 지원

□ 농식품부는 코로나19 피해 농가에 대한 농협의 대출 심사를 최우선하여 처리(통상 3~4일 소요 → 1~2일로 단축)토록 독려하고,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이다.

**<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조치 >**

□ 또한 이번 '코로나19'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, 경상북도 경산시·청도군·봉화군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존에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(이율 2.5%)에 대해 1~2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.

○ 지원대상은 '코로나19'로 정상적인 영농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농업인으로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지원된다.

- i) 본인, 배우자 등 가족이 감염, 감염의심으로 격리된 경우 1년 지원
- ii) 내외국인 농작업 보조인력 부족으로 구인난을 겪는 경우 1년 지원
- iii) 2.1일 기준 전후 3개월간 매출 감소 또는 5.1일 기준 전년대비 3개월간 (2.1.~4.30.) 매출 감소로 경영난을 겪는 경우, 매출감소액이 30~49%는 1년, 50% 이상은 2년간 지원

○ 희망 농업인이 5.1.~5.29. 기간 중 해당 읍·면·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지자체가 피해내역 확인 후 농협에 통보하고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시행한다.

**< 농업종합자금 등 정책자금 대출 요건 한시적 완화 >**

□ 이와 더불어, 농업종합자금 등 정책자금 대출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농업인 등의 금융부담을 경감한다.

○ 농산물가공업자, 농촌관광업자 등이 농업종합자금을 재대출할 경우 원금의 10%(농산물가공업은 20%) 이상을 상환해야 했으나\*, '20년 말까지는 일부 상환하지 않아도 전액 재대출이 가능하다.

\* 농업종합자금 중 농산물가공업 운영자금(20% 상환의무), 농촌관광사업 운영자금(10% 상환의무), 기술창업자금 운영자금(10% 상환의무)에만 우선 적용 중

○ 또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영농활동을 하지 못한 농업인이나 판매량·매출액의 현저한 감소를 겪은 농업인은 기존에 농협을 통해 받은 농업용 대출을 농업경영회생자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.

\* 농업경영회생자금 :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를 겪는 농업인의 농업용부채를 연 1.0%,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자금으로 대환

- 농촌관광 분야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하여, 상가 등 비농업용 부동산을 소유한 농업인도 해당 상가를 농촌관광 등 농업관련 활동에 활용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되도록 요건을 완화한다.

○ (지원대상) 코로나19 확진·자가격리 등에 따라 정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못한 농업인, 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생산량, 판매량 또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 15% 이상 감소한 농업인

\* 보건당국, 지자체 등이 발급한 확진·자가격리 확인서, 계약 취소 및 판매처 폐쇄 공문, 전년 대비 출하량 또는 매출액 15% 이상 감소 증빙 서류 등 필요

- 상가 등 비농업용 부동산 소유자는 해당 부동산을 처분한 후 자금 지원 가능(다만, 농촌관광 등 농업 관련 활동에 활용해 온 상가는 대출심사에서 인정될 경우 처분하지 않아도 자금 지원 가능)

○ (지원조건) 연 1.0% 고정금리,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

- 신청일 기준 향후 3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농·축협 또는 농협은행의 농업용 대출 원리금을 최대 20억원까지 농업경영회생 자금으로 대체(농업법인의 경우 최대 30억원까지)

○ (대출절차) 기존 농업용 대출을 받은 농·축협 및 농협은행에 신청, 지원대상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지원

□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“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신속한 대출 업무 처리, 현장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”고 밝혔다.